

붙임.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 (관련부서장의 권한과 책임) 협력업체 운영과 관련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업무의 전결권한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 (생략) 2. 총괄부서장: 협력업체 생산품 품질, <u>안전/환경요건</u> 확보방안 총괄, 기술지도 총괄, 외부기술인력지원 총괄 등 3. 소관부서장 : 소관분야의 협력업체 생산품 품질, <u>안전/환경요건</u> 확보, 소관부서 <u>협력분야</u> 및 <u>협력업체</u> 추천, 신규 등록 및 재평가 시의 수행능력평가, 정기평가, 기술지도 등 4. ~ 5. (생략) 제6조 (협력업체운영심의회 구성) ① (생략)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당연직위원은 기획담당부서장, 법무담당부서장, 본부 및 연구원 총괄부서장 및 <u>품질안전담당부서장</u>으로 한다. 다만,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위반 심의는 감사담당부서장을, 보안 사고 관련 심의는 <u>보안담당부서장</u>을 당연직위원에 포함한다. 당연직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한 직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4. (생략) ③ (생략) 제8조 (심의사항)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생략) 2. <u>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 조정</u> 3. ~ 10. (생략) 제10조 (결과조치) ① (생략)	제5조 (관련부서장의 권한과 책임) 협력업체 운영과 관련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업무의 전결권한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총괄부서장: 협력업체 생산품 품질, <u>안전환경요건</u> 확보방안 총괄, 기술지도 총괄, 외부기술인력지원 총괄 등 3. 소관부서장 : 소관분야의 협력업체 생산품 품질, <u>안전환경요건</u> 확보, 소관부서 <u>협력분야</u> 추천, 신규 등록 및 재평가 시의 수행능력평가, 정기평가, 기술지도 등 4. ~ 5. (현행과 같음) 제6조 (협력업체운영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당연직위원은 기획담당부서장, 법무담당부서장, 본부 및 연구원 총괄부서장 및 <u>품질담당부서장</u>으로 한다. 다만,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위반 심의는 감사담당부서장을, 보안 사고 관련 심의는 <u>보안담당부서장</u>을, <u>안전환경분야</u> 관련 심의는 <u>안전담당부서장</u>을 당연직위원에 포함한다. 당연직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한 직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심의사항)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현행과 같음) <u><삭제></u> 2. ~ 9. (현행과 같음) 제10조 (결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운영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u>협력업체 운영업무에 반영하여</u> <u>관련부서의 협조 및 결재권자의 승인</u>을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 및 제한) ① 협력분야별 등록업체는 협력분야별로 5개 이상의 업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력분야별로 등록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연간 발주 예상사업의 규모 및 빈도가 과소한 경우 2. 제18조에 의하여 평가된 등록적격업체 중 규모, 능력 등에서 변별력이 크지 않은 업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3. 협력업체 등록 적격업체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4. 협력업체 등록 평가점수,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운영심의회에서 협력분야별 업체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를 제한하는 경우 제18조에 의거 평가된 적격업체 전체의 평가내역을 첨부하고 등록여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운영심의회 심의 및 <u>전결권자의 승인</u>을 받아야 한다. ③ 등록업체 수는 소관부서장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각 기술 분야의 분야별 업체 수를 각 전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종합조정하고, <u>주관부서장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 회사 전체의 등록업체수를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규등록 시 전결권자의 승인</u>을 받아 확정한다. 제15조 (협력업체의 기본자격요건) ① ~ ② (생략) ③ 사업개발, 기술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부서 본부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u>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u>, 이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 본부장의 협력	② 운영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u>전결권자의 승인</u>을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 협력분야별 등록업체는 협력분야별로 5개 이상의 업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등록업체수가 부족한 경우 등은 실제 등록된 업체수로 운영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조 (협력업체의 기본자격요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개발, 기술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부서 본부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u>제1항 제1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u>, 이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 본부장의 <u>별지 제1호서식</u>

현행	개정(안)
업체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업체 등록평가기준) ① (생략)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4. <u>과거 회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그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u> 5. (생략) 제17조 (등록평가 부서장과 평가자의 자격요건) ① 평가항목별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부서장이 지정한다. 1. (생략) 2. <u>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평가 : 품질안전 담당부서장</u> <u><신설></u> 3.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제18조 (등록평가의 방법) ① 등록평가는 제15조에 따른 협력업체의 기본자격요건 부합여부(이하 ‘1차 평가’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기본자격요건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적격업체에 한하여 제16조에 따른 2차 평가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협력업체추천서)에 의거 1차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2차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 평가 시 경영상태 신용도 점수는 최저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② ~ ⑤ (생략) <u><신설></u> <u><신설></u>	(협력업체추천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업체 등록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4. (현행과 같음) 제17조 (등록평가 부서장과 평가자의 자격요건) ① 평가항목별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부서장이 지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u>품질 활동능력평가 : 품질담당부서장</u> 3. <u>안전환경 활동능력평가 : 안전담당부서장</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 (등록평가의 방법) ① 등록평가는 제15조에 따른 협력업체의 기본자격요건 부합여부(이하 ‘1차 평가’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기본자격요건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적격업체에 한하여 제16조에 따른 2차 평가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협력업체추천서)에 의거 1차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2차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주관부서장은 평가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모든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간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u> ⑦ <u>이의제기한 업체에 대한 재평가 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며, 기존 평가위원 외 1</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⑥ 주관부서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19조 (협력업체의 선정) ① 소관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경영상태, 수행능력의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품질, 안전/환경활동능력평가 배점의 80%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협력업체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기준에 미달된 업체라도 사업개발, 기술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협력업체 선정(안)에 포함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 선정(안)의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는 제12조에 따르며, 등록적격업체를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열거하여 협력업체 선정(안)을 작성한다. 다만, 등록적격업체 중 회사의 기술 및 영업보호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점수 순위에 관계없이 협력업체 선정(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 따라 협력분야별로 등록업체 수를 제한한 경우, 평가점수가 동점인 업체로 인하여 동 분야에 제한된 수가 초과되면 인력상태, 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 신용도, 사업수행실적 순으로 각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전 항목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최종 협력업체를 추천할 때 등록적격업체는 물론 등록을 신청한 모든 업체가 포함된 선정(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운영심의회 개최를 요청한다.	인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 평가해야 한다. ⑧ 이의제기 업체에 대한 재평가 시 중대한 사유(평가기준 오류, 허위서류 등)가 발견된 경우, 해당 협력분야 전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주관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19조 (협력업체의 선정) ① 주관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경영상태, 수행능력의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품질, 안전환경활동능력평가 배점의 80%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협력업체 선정(안)으로 작성한다. 다만, 선정(안)의 업체 중 회사의 기술 및 영업보호 등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운영심의회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 선정(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u><제19조제1항으로 통합이관 삭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⑤ 주관부서장은 해당 내용 검토 후에, 운영심의회를 개최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⑥ 주관부서장은 선정 여부가 결정된 후 1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모든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거절된 업체에게는 통보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며, 15일간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⑦ 등록신청을 하여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업체는 통보 받은 부적격 선정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재등록신청이 제한된다. 제22조 (활용의 원칙) ① ~ ② (생략) ③ 발주사업의 내용이 협력약정분야는 아니지만 협력업체 중 업무수행의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 동 업체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5조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수행실적평가 시 평가대상 협력업체(당해년도 기성 실적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자체이행평가[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이행평가를 요청받은 협력업체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소관사업의 발주사업(기타 지원부문 포함, 이하 ‘사업’이라 칭함)에 대한 작업지시서 발급, 납품, 검수, 대가 지급, 계약 변경 등 이행단계의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관리대장을 운영하여야 하고, 협력업체가 작성한 제1항의 자체이행평가표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별지 제7호서식(사업수행실적평가표)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항목별 평가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상 당해년도 이후 계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안)을 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선정 여부가 결정된 후 1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모든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거절된 업체에게는 통보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 (활용의 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삭 제> ① 사업부서장은 소관사업의 발주사업(기타 지원부문 포함, 이하 ‘사업’이라 칭함)에 대한 작업지시서 발급, 납품, 검수, 대가 지급, 계약 변경 등 이행단계의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관리대장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의거 별지 제7호서식(사업수행실적평가표)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항목별 평가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상 당해년도 이후 계

현행	개정(안)
속사업의 경우 <u>익년도 초 평가한다</u>. 다만,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과 계약서에 의거 사업의 중간결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생략) 3. 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품질 항목 : <u>품질안전담당부서</u> 다. (생략) 4. ~ 5. (생략) ③ (생략) ④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확인된 품질항목 문제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u>품질안전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장에게 품질항목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u>. 제27조 (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협력업체의 정기평가는 협력약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협력업체가 사업수행 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4. (생략)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중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u>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u> 6. ~ 12. (생략) 13.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와 심각한 보안위규 사항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 <u>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u> 14.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u>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u> 15.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u>재등록제한 6개월에서 2년</u>	속사업의 경우 <u>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다</u>. 다만,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과 계약서에 의거 사업의 중간결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사업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품질 항목 : <u>품질담당부서</u> 다.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확인된 품질항목 문제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u>품질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장에게 품질항목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u>. 제27조 (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협력업체의 정기평가는 협력약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협력업체가 사업수행 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중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u>2년 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u> 6. ~ 12. (현행과 같음) 13.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와 심각한 보안위규 사항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 <u>2년 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u> 14.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u>2년 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u> 15.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u>재등록제한 6개월부터 2년까지</u>

현행	개정(안)
16. ~ 18. (생략) ② ~ ⑩ (생략) 제30조의2 (부적격업체의 선정 및 제재) ① 주관부서장은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협력업체 정기평가가 완료된 후 소관부서장이 해지로 추천한 부적격업체에 대해서 운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지 및 감점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부적격업체에게는 해당협력분야에 한해 입찰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심사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부적격업체에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u><신설></u> <u><신설></u>	16. ~ 18.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 (부적격업체의 선정 및 제재) 주관부서장은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협력업체 정기평가가 완료된 후 소관부서장이 해지로 추천한 부적격업체에 대해서 운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지 및 감점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u><삭제></u> 제31조 (기타사항) 본 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력업체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규정 및 위원회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 1.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첨부1) 별표 2. 업체평가기준(첨부2) 별지 제1호서식 협력업체 추천서(첨부3) 별지 제2호서식. 부문 업체평가표(첨부4) 별지 제5호서식 표준협력약정서(첨부5)	별표 1.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첨부1) 별표 2. 업체평가기준(첨부2) 별지 제1호서식. 협력업체 추천서(첨부3) 별지 제2호서식. 부문 업체평가표(첨부4) 별지 제5호서식 표준협력약정서(첨부5)
부칙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u>결재중인</u>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의한다.	

첨부 1.
(현 행)
별표 1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

1.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기술분야	활용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품 질	공통	품질검사	- 기계부문의 용접분야, 건설부문의 품질시험 분야,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분야, 원자력부문의 비파괴 검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품질안전 담당부서
사업관리	공통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인력(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고급기술자 1인 이상) 보유자	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발전	- 원자력부문의 원자력·방사선 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원자력발전 담당부서
기 계	원자력, 플랜트, 원자로	기계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플랜트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 설비 부분의 설비분야 또는 -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원자력, 플랜트	소방설비	- 산업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배 관	원자력, 플랜트	배관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배관설계 담당부서
전 기	원자력, 플랜트	전기설계	-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1종)자	전기설계 담당부서
계 측	원자력, 플랜트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원자로	원전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건 축	원자력, 플랜트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	건축 담당부서

기술분야	활용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토 목	원자력, 플랜트	토목구조	-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육상측량	- 건설부문의 측량·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자	
		수로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수로사업자	
		도로 및 공항	-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 및 기초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질 및 지반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항만 및 해안	-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플랜트	상하수도	-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설>	<신 설>	<신 설>	
정 보	공통	정보기술	- 정보통신부문의 정보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기술 담당부서

비 고

1.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

2. 전문건설공사 부문

공사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기계/배관공사	기계설치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담당부서
	배관	기계설비공사업	
	철골	강구조물공사업	
	탱크	기계설비공사업	
	건축설비	기계설비공사업	
	기타 기계공사 (중량물 운반/설치, 도장, 보온)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계장공사	전기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 담당부서
	계장		
토목/건축공사	토공	토공사업	토목/건축공사 담당부서
	포장	포장공사업	
	강구조물	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 · 창호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보링 · 그라우팅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상 · 하수도설비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도장	도장공사업	
	미장 · 방수 · 조적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비계 · 구조물해체	비계 · 구조물해체공사업	
	석공	석공사업	
	실내건축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공사담당부서
	풍력	풍력전문기업	

비 고

1. 기계/배관공사, 토목/건축공사분야 각 협력분야의 자격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함.
2. 신·재생에너지분야 각 협력분야의 자격요건 중 태양에너지전문기업 및 풍력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한 해당 업종의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를 말함.

3. 기타지원 부문

지원분야	협력분야		자 격 요 건	소관부서
	활용	분야		
기자재 구매	공통	물류/운송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체	물류/운송 담당부서

(개 정)

별표 1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

1.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공통	품 질	품질검사	- 기계부문의 용접분야, 건설부문의 품질시험 분야,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분야, 원자력부문의 비파괴 검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1개 이상 분야에 등록된 엔지니어링사업자	품질안전 담당부서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인력(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고급기술자 1인 이상) 보유자	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
	정 보	정보기술	- 정보통신부문의 정보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이거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기술 담당부서
원자력, 에신, 원자로	기 계	기계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원자력, 에신	기 계	소방설비	- 산업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배 관	배관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	배관설계 담당부서
	전 기	전기설계	-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 1종)자	전기설계 담당부서
	계 측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건 축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	건축 담당부서
	토 목	토목구조	-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육상측량	- 건설부문의 측량·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자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u>원자력· 에신</u>	<u>토 목</u>	<u><삭 제></u>	<u><삭 제></u>	토목기술 담당부서
		도로 및 공항	-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 및 기초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질 및 지반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항만 및 해안	-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u>원자력</u>	<u>원 자 력</u>	원자력발전	- 원자력부문의 원자력·방사선 관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원자력발전 담당부서
<u>에신</u>	<u>기 계</u>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 설비 부분의 설비분야 또는 -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건설 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u>토 목</u>	상하수도	-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수로측량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해양조사·정보업자	
<u>원자로</u>	<u>계 측</u>	원전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비 고

1. 활용분야 중 에신이란 수·화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신사업 부문을 말함
2.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

2. 전문건설공사 부문

공사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기계/배관공사	기계설치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담당부서
	배관	기계설비공사업	
	철골	강구조물공사업	
	탱크	기계설비공사업	
	건축설비	기계설비공사업	
	기타 기계공사 (중량물 운반/설치, 도장, 보온)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계장공사	전기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 담당부서
	계장		
토목/건축공사	토공	토공사업	토목/건축공사 담당부서
	포장	포장공사업	
	강구조물	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 · 창호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보링 · 그라우팅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상 · 하수도설비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도장	도장공사업	
	미장 · 방수 · 조적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비계 · 구조물해체	비계 · 구조물해체공사업	
	석공	석공사업	
	실내건축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공사담당부서
	풍력	풍력전문기업	

비 고

1. 기계/배관공사, 토목/건축공사분야 각 협력분야의 자격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함.
2. 신·재생에너지분야 각 협력분야의 자격요건 중 태양에너지전문기업 및 풍력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한 해당 업종의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를 말함.

3. 기타지원 부문

지원분야	협력분야		자 격 요 건	소관부서
	활용	분야		
기자재 구매	공통	물류/운송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체	물류/운송 담당부서

첨부 2
(현 행)
별표 2

업체평가기준

I.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5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5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5	
	품질활동능력	품질조직, 인력, 품질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15	
공 통	가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0 ~ 2	
	감 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기술자, 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③ 보유기술자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협력분야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⑤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⑥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용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결과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 (+, 0, -)	<u>미만</u> (<u>소관</u> <u>본부장</u> <u>추천</u>)
평 가 점 수	35	33	31	29	27	<u>25</u>

- ③ 신용평가 기준 미만이나 협력업체 추천서를 통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해 평가 시에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 등급의 점수(25점)를 적용한다.
-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35	32	29	26	23	0

-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sum(\text{등급별 인원} \times \text{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29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활용분야내에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⑤ 보유인력은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예 시 >

구 분	평 점				
건수기준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 미만
	7.5	6.8	6.1	5.4	4.7
금액기준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7.5	6.8	6.1	5.4	4.7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sum(\text{건수(금액)} \times \text{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0.7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④ 사업수행실적은 도급수행실적인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활동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 직 및 인 력	품 질 조 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 조직	유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0.0 (0%)
	품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필요시)-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무 : 0.0 (0%)			
시 스 템 수 립	품질시스템 (*)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0%)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 심사 수검 실적 (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대 내 · 외 교 육 훈 련	대내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대외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5	-

(*) 품질시스템이 0점으로 평가될 경우, 품질시스템 도입 경과, 대외감사/심사 수검 실적(최근 2년)을 평가하지 않고 0점 처리한다.

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점 및 감점을 한다.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각 유효기간 내인 경우(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확인, 인증, 선정된 경우의 것에 한함),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가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②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정부 정책 지원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0.5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선정한 경우	0.5
계약 규범 이행	가. 부정당제재 (1)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나. 최근 2년간 당사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심사항목		평점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1) 1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3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5
	(2) 2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1.0
	(3) 3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2.0
	다.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위반 1건 (1명 기준)	△0.5
	■ 위반 2건 (2명 기준)	△1.0

③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가점 또는 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II. 전문건설공사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0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10	
	시공능력평가	전국시공능력순위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30	
	<u>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u>	<u>품질조직, 인력, 품질, 안전/환경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u>	<u>20</u>	
공 통	가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0 ~ 2	
	감 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기술자, 공사 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③ 보유기술자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령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 ④ (삭제)
- ⑤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⑥ 공사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⑦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u>BB미만</u> (소관 본부장 추천)	<u>BB미만</u>
평 가 점 수	40	38	36	34	32	30	—

- ③ 신용평가 기준 미만이나 협력업체 추천서를 통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해 평가시에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 등급의 점수(30점)를 적용한다.
-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10	9	8	7	6	0

-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 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8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라.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의 해당 공종별 최근년도 전국시공능력 평가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상위 10%이내	상위10%이하 ~20%이내	상위20%이하 ~30%이내	상위30%이하 ~50%이내	상위 50%이하
평가점수	30	27	24	21	18

② 시공능력평가순위 발급이 없는 공종은 최근년도 해당 공종의 시공능력평가액(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예 시 >

구 분	평 점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 미만
	15.0	13.5	12.0	10.5	9.0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실적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3억이상	13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15.0	13.5	12.0	10.5	9.0

③ 협력분야별 건수 및 금액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마. 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직 및	품질조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 조직	유(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인 력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0.0 (0%)
	안전조직	1.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안전환경 전담조직	유(조직도 제출)		무(조직도 미제출)	
			안전관리자	유	무	유	무
			평점	1.0 (100%)	0.8 (80%)	0.8 (80%)	0.0 (0%)
	품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무 : 0.0 (0%)				
시 스템 수 립	품질시스템 (*)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0%)				
	안전환경시스템	4.0	○안전환경시스템-유, 절차서/표준수립 상태-우수 : 4.0 (100%) ○안전환경시스템-유, 절차서/표준수립 상태-보통 : 3.6 (90%) ○안전환경시스템-무, 발주시스템 적용검험-유 : 3.2 (80%) ○안전환경시스템-무, 발주시스템 적용검험-무 : 0.0 (0%)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심사 수검실적 (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대 내 · 외 교 육 훈 련	대내교육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대외교육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합 계		20	-

(*) 품질시스템이 0점으로 평가될 경우, 품질시스템 도입 경과, 대외감사/심사 수검 실적(최근 2년)을 평가하지 않고 0점 처리한다.

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점 및 감점을 한다.

-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각 유효기간 내인 경우(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확인, 인증, 선정된 경우의 것에 한함),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가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②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정부 정책 지원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 으로 확인한 경우	0.5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 으로 확인한 경우	0.5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한 경우	0.5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선정한 경우	0.5
계약 규범 이행	가. 부정당제재 (1)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2.0 △1.5 △1.0

심사항목		평점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나. 최근 2년간 당사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1) 1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3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5
	(2) 2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1.0
	(3) 3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2.0
	다.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위반 1건 (1명 기준)	△0.5
	■ 위반 2건 (2명 기준)	△1.0

③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가점 또는 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III. 기타지원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5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5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5	
공 통	가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0 ~ 2	
	감 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보유인력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④ 사업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⑤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B미만 (소관 본부장 추천)	BB 미만
평 가 점 수	40	38	36	34	32	30	=

- ③ 신용평가 기준 미만이나 협력업체 추천서를 통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해 평가 시에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 등급의 점수(30점)를 적용한다.
-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⑥ 해당 협력분야의 업계 특성상 제1항의 신용평가등급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관 부서장은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평점 및 대응등급은 조정할 수 없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12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50% 이상	50% 미만
평가점수	30	27	24	21	18	0

-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 등급별 계수)

<예 시>

등 급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경력 년 이상	10	1	1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평가점수 = 24점
경력 년 이상	8	2	2	
xx자격보유인력	6	3	3	

xx자격보유인력 등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인력은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최근 3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예 시>

구 분	평 점				
건수기준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15.0	13.5	12.0	10.5	9.0
금액기준	10억 이상	10억 미만 ~ 7억 이상	7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 3억 이상	3억 미만
	15.0	13.5	12.0	10.5	9.0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sum(\text{건수(금액)} \times \text{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0.8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④ 해당 협력분야의 역무 특성상 제①항의 건수 또는 금액 기준 중 일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장은 당해 일방의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일방의 평점을 그 두 배로 적용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점 및 감점을 한다.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각 유효기간 내인 경우(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확인, 인증, 선정된 경우의 것에 한함),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가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②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정부 정책 지원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0.5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선정한 경우	0.5
계약 규범 이행	가. 부정당제재 (1)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나. 최근 2년간 당사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1) 1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3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2) 2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3) 3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5 △1.0 △2.0
	다.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위반 1건 (1명 기준) ■ 위반 2건 (2명 기준)	△0.5 △1.0

③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가점 또는 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 정)

별표 2

업체평가기준

I.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5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5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5	
	품질활동능력	품질조직, 인력, 품질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15	
공 통	가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0 ~ 2	
	감 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

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기술자, 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③ 보유기술자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협력분야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⑥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신용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결과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 (+, 0, -)
평 가 점 수	35	33	31	29	27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35	32	29	26	23	0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X 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29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활용분야내에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⑤ 보유인력은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예 시 >

구 분	평 점				
건수기준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 미만
	7.5	6.8	6.1	5.4	4.7
금액기준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7.5	6.8	6.1	5.4	4.7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sum(\text{건수(금액)} \times \text{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0.7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④ 사업수행실적은 도급수행실적인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활동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직 및 인력	품질조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 조직	유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0.0 (0%)
	품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감사자/시험자(필요시)-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감사자/시험자-무 : 0.0 (0%)				
시스템 수립	품질시스템 (*)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0%)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 심사 수검 실적 (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대내· 외 교육 훈련	대내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대외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합 계		15	-				

(*) 품질시스템이 0점으로 평가될 경우, 품질시스템 도입 경과, 대외감사/심사 수검 실적(최근 2년)을

평가하지 않고 0점 처리한다.

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점 및 감점을 한다.

-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각 유효기간 내인 경우(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확인, 인증, 선정된 경우의 것에 한함),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가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②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정부 정책 지원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0.5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선정한 경우	0.5
계약 규범 이행	가. 부정당제재 (1)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나. 최근 2년간 당사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1) 1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3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5

심사항목		평점
	(2) 2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1.0
	(3) 3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2.0
	다.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위반 1건 (1명 기준)	△0.5
	■ 위반 2건 (2명 기준)	△1.0

③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가점 또는 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II. 전문건설공사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0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10	
	시공능력평가	전국시공능력순위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30	
	<u>품질활동능력</u>	<u>품질조직, 인력, 품질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u>	<u>15</u>	
	<u>안전환경활동능력</u>	<u>안전조직, 안전환경시스템 수립 및 운영</u>	<u>5</u>	
공 통	가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0 ~ 2	
	감 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기술자, 공사 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③ 보유기술자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령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④ (삭제)

⑤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⑥ 공사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⑦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 (+, 0, -)
평 가 점 수	40	38	36	34	32	30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10	9	8	7	6	0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 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8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라.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의 해당 공종별 최근년도 전국시공능력 평가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상위 10%이내	상위10%이하 ~20%이내	상위20%이하 ~30%이내	상위30%이하 ~50%이내	상위 50%이하
평가점수	30	27	24	21	18

② 시공능력평가순위 발급이 없는 공종은 최근년도 해당 공종의 시공능력평가액(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예 시 >

구 분	평 점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 미만
	15.0	13.5	12.0	10.5	9.0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실적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3억이상	13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15.0	13.5	12.0	10.5	9.0

③ 협력분야별 건수 및 금액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마. 품질활동능력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 직 및 인 력	품질조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 조직	유(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0.0 (0%)
	품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무 : 0.0 (0%)			
시 스 템 수 립	품질시스템 (*)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0%)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심사 수검실적 (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대 내 · 외 교 육 훈 련	대내교육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대외교육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합 계		15	-			

(*) 품질시스템이 0점으로 평가될 경우, 품질시스템 도입 경과, 대외감사/심사 수검 실적(최근 2년)을 평가하지 않고 0점 처리한다.

바. 안전환경 활동능력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직 및 인 력	안전조직	1.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안전환경 전담조직	유(조직도 제출)		무(조직도 미제출)		
			안전관리자	유	무	유	무	
			평점	1.0 (100%)	0.8 (80%)	0.8 (80%)	0.0 (0%)	
시스 템 수 립	안전환경시스템	4.0	○안전환경시스템-유, 절차서/표준수립 상태-우수 : 4.0 (100%) ○안전환경시스템-유, 절차서/표준수립 상태-보통 : 3.6 (90%) ○안전환경시스템-무, 발주시스템 적용검험-유 : 3.2 (80%) ○안전환경시스템-무, 발주시스템 적용검험-무 : 0.0 (0%)					
합 계		5	-					

사.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점 및 감점을 한다.

-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각 유효기간 내인 경우(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확인, 인증, 선정된 경우의 것에 한함),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가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②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정부 정책 지원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 으로 확인한 경우	0.5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 으로 확인한 경우	0.5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한 경우	0.5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선정한 경우	0.5

III. 기타지원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0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0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5	
공 통	가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0 ~ 2	
	감 점	부정당징제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보유인력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④ 사업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⑤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 (+, 0, -)
평 가 점 수	40	38	36	34	32	<u>30</u>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④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⑤ 해당 협력분야의 업계 특성상 제1항의 신용평가등급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관 부서장은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평점 및 대응등급은 조정할 수 없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12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50% 이상	50% 미만
평가점수	30	27	24	21	18	0

-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 등급별 계수)

<예 시>

등 급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경력 년 이상	10	1	1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평가점수 = 24점
경력 년 이상	8	2	2	
xx자격보유인력	6	3	3	
xx자격보유인력 등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인력은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최근 3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예 시>

구 분	평 점				
건수기준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15.0	13.5	12.0	10.5	9.0
금액기준	10억 이상	10억 미만 ~ 7억 이상	7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 3억 이상	3억 미만
	15.0	13.5	12.0	10.5	9.0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sum(\text{건수(금액)}) \times \text{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0.8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④ 해당 협력분야의 역무 특성상 제①항의 건수 또는 금액 기준 중 일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장은 당해 일방의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일방의 평점을 그 두 배로 적용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점 및 감점을 한다.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각 유효기간 내인 경우(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확인, 인증, 선정된 경우의 것에 한함),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가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②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정부 정책 지원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0.5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0.5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선정한 경우	0.5
계약 규범 이행	가. 부정당제재 (1)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나. 최근 2년간 당사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1) 1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3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2) 2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3) 3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5 △1.0 △2.0
	다.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위반 1건 (1명 기준) ■ 위반 2건 (2명 기준)	△0.5 △1.0

③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가점 또는 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첨부 3.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협력업체 추천서			
1. 추천업체 개요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 개시일	
소재지		전 화 번 호	
주요사업 내 용	(별지작성 가능)		
2. 기본자격요건 구비여부 (해당사항에 ☒ 표 및 증빙서류 첨부)			
①중소기업 여부 : (0, X)		②신용평가등급 BB이상 : (0, X)	③협력분야별 면허요건 충족여부 (충족, 미흡)
3. 추천사유			
가. 업체의 기술능력(별지 작성가능)			
나. 업체의 예상 활용도 및 추천사유			
다. 특기사항(기본자격요건 미비시 추천사유 등)			
위 업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회사 0000분야 협력업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 되므로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처장(실장/사업책임자) 성명 :	㉠
소관부서 본부장 :		성명 :	㉠
(주 관 부 서 장) 귀하			

첨부 : 기본자격요건 증빙서류

첨부 2.
(개 정)
별지 제1호 서식

협력업체 추천서			
1. 추천업체 개요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 개시일	
소재지		전 화 번 호	
주요사업 내 용	(별지작성 가능)		
2. 기본자격요건 구비여부 (해당사항에 ☒ 표 및 증빙서류 첨부)			
중소기업 여부 : (0, X)	<삭 제>		<삭 제>
3. 추천사유			
가. 업체의 기술능력(별지 작성가능)			
나. 업체의 예상 활용도 및 추천사유			
다. 특기사항(기본자격요건 미비시 추천사유 등)			
위 업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회사 0000분야 협력업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 되므로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처장(실장/사업책임자) 성명 :	①
소관부서 본부장 :		성명 :	①
(주 관 부 서 장) 귀하			

첨부 : 기본자격요건 증빙서류

첨부 4.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부문 업체평가표

년 월 일

업 체 명		협력분야	
-------	--	------	--

항 목	세 항 목	배 점	평 점	평 가 자	서 명
경영상태	신 용 도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사업수행실적				
	품질활동능력 (안전/환경 활동 능력)				
공 통	감 점				
합계		100			

비고 :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 정)
별지 제2호 서식

부문 업체평가표

년 월 일

업 체 명		협력분야	
-------	--	------	--

항 목	세 항 목	배 점	평 점	평 가 자	서 명
경영상태	신 용 도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u>사업수행실적/</u> <u>시공능력평가</u>				
	<u>품질활동능력</u>				
	<u>안전환경활동 능력</u>				
공 통	감 점				
합계		100			

비고 :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첨부 5.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

기본자격요건 평가표

년 월 일

협력분야		업체명	
------	--	-----	--

<협력업체 기본 자격요건>_주관부서

항 목	평가기준	평가	적합/부적합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상태	금융감독원지정 외부 적격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BB급 이상인지 여부		
청렴/윤리 준수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자		
입찰참가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재취업	우리 회사 퇴직 임.직원 중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재등록 제한	우리회사의 협력약정 해지에 의한 재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평 가 자		서 명	

< 비 고 >

1. 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내용 입력
- 중소기업요건 평가내용 :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기타 기재
* 기타의 경우는 소관부서 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등 포함
 - 경영상태 : 협력업체운영상무절차 별표2에 따른 신용등급 기재
.AAA, AA(+, 0, -), A(+, 0, -), BBB(+, 0, -), BB(+, 0, -), BB미만, 본부장 추천
* 기본자격요건 미만으로 소관부서 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본부장 추천으로 기재

- 청렴/윤리준수 : 해당, 비해당 기재
 - 입찰참가제한 : 해당, 비해당 기재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확인서 등을 통해서 제재처분 중에 있는지 확인
 - 재취업 : 고용, 비고용 기재(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평가내용 입력 후 평가항목별 적합/부적합 기재

<협력업체 기본 자격요건(면허)>_주관부서

기본자격요건			
항 목	평가기준	평가	적합/부적합
면허 및 자격	협력분야별로 요구되는 면허 및 자격요건보유 여부		
평 가 자		서 명	

1. 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내용 입력
- 면허 및 자격 : 보유 또는 미보유 기재
2. 평가내용 입력 후 평가항목별 적합/부적합 기재

기본자격요건 평가표

년 월 일

협력분야		업체명	
------	--	-----	--

<협력업체 기본 자격요건>_주관부서

항 목	평가기준	평가	적합/부적합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상태	금융감독원지정 외부 적격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BB급 이상인지 여부		
청렴/윤리 준수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자		
입찰참가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재취업	우리 회사 퇴직 임.직원 중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재등록 제한	우리회사의 협력약정 해지에 의한 재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평 가 자		서 명	

< 비 고 >

1. 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내용 입력
- 중소기업요건 평가내용 :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기타 기재
* 기타의 경우는 소관부서 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등 포함
 - 경영상태 :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별표2에 따른 신용등급 기재
.AAA, AA(+, 0, -), A(+, 0, -), BBB(+, 0, -), BB(+, 0, -), BB미만
 - 청렴/윤리준수 : 해당, 비해당 기재

- 입찰참가제한 : 해당, 비해당 기재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확인서 등을 통해서 제재처분 중에 있는지 확인
- 재취업 : 고용, 비고용 기재(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평가내용 입력 후 평가항목별 적합/부적합 기재

<협력업체 기본 자격요건(면허)>_주관부서

기본자격요건			
항 목	평가기준	평가	적합/부적합
면허 및 자격	협력분야별로 요구되는 면허 및 자격요건보유 여부		
평 가 자		서 명	

1. 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내용 입력
 - 면허 및 자격 : 보유 또는 미보유 기재
2. 평가내용 입력 후 평가항목별 적합/부적합 기재

첨부 6.

(현 행)

별지 제5호서식 (2020.12.29. 개정)

표준협력약정서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에 주소를 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약정자"라 한다)와
에 주소를 둔 (이하 "약정상대자"
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약정자와 약정상대자가 국내·외 사업에 공동참여하는데 있어 사업품질 향상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사간의 상호협력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협력분야 및 범위)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측량법에서 정의한 기술용역 등을 말한다.
2. "전문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상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말한다.
3. "기타지원"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 건설공사 부문의 지원 및 기자재 구매 또는 기타 일반 분야의 지원을 말한다.

② 양사는 사업을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1. 설계엔지니어링사업 (분야:)
2. 전 문 건 설 공 사 (분야:)
3. 기 타 지 원 (분야:)

③ 제2항의 협력분야에 대한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공동수행
2. 기술인력의 상호지원
3. 사업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④ 제3항에 규정된 양사간의 협력범위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조정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서를 갱신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 3 조 (협력방법)

①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본 약정의 목적 및 협력범위 내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참여 또는 상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양사는 국내·외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해 기술 또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 양사의 소속인력을 상대방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4 조 (비밀준수 및 지식재산권보호)

① 양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수행 또는 협력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기타 정보 및 자료는 본 약정의 기간 만료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영업 또는 비영업 목적으로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적법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약정 체결의 취지에 따라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상대방의 경영, 기

술, 인력현황, 사업수행경험은 공개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③ 약정대상자는 약정자가 필요에 의해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증 및 책임)

① 양사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본 약정에 따른 사업의 공동수행 중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계약 체결 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 6 조 (상호협조 및 신의성실의무)

① 양사는 본 약정서 제1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와 범위에 정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② 양사는 상호 당초 협력약정을 체결한 시점에서 확인된 자격과 요건을 협약이 지속되는 전 기간동안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③ 어느 일방에서 제2항의 요건과 자격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협약은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제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이의 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기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분쟁해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공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정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8 조 (유효기간)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양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4년간(협력약정 정지 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중에는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협력 약정이 유지되며, 정기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협력약정이 해지된다. 이 경우 약정상대자가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부터 약정은 해지된다.

② 약정상대자는 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약정상대자의 약정갱신 신청에 대하여 약정자의 사정으로 약정 만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정갱신 심사 완료시까지 약정의 유효기간은 연장된다.

④ 약정자가 재평가 시행을 하는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또는 제9조에 의해 협력약정이 정지된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약정재개 통보를 받은 지정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재개된다.

제 9 조 (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제8조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코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본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은 정지 또는 해지한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이 일정기간 제한 된다. 다만, 제5호, 제11호, 제12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등록자격 및 면허, 신고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2.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제한 6개월

3. 대외기관 등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일방당사자에게 불명예를 끼친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4. 제26조의 3에 의한 재평가결과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자격요건 또는 신규등록기준 미달 업체 및 협력업체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업체 : 재등록제한 6개월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6. 협력약정 및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 가. 협력약정 위배 : 재등록제한 2년
 - 나. 중대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1년
 - 다. 경미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6개월
 7. 협력약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가. 협력약정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2년
 - 나. 계약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1년
 8.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9.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품질, 보안준수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0. 공동수급협정을 위반하여 사업수주 또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1.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와 심각한 보안위규 사항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2.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3.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에서 2년
 14. 협력상대자로부터 협력약정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15.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및 품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16. 해당 협력분야가 폐지되었을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 심의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제한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 일방약정자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협력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해지 사유가 특정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협력분야의 약정만 해지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경우는 모든 협력약정분야를 해지 할 수 있다.
- ⑤ 일방약정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 ⑥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이 해지된 당사자는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위반 사유별로 협력업체 재등록이 제한된다.

제 10 조 (용어의 해석 등)

본 약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양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경과조치)

본 협력약정에 의거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가 기존의 협력약정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사업은 본 협력약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약 정 자

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

상 호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대표자 : 사장 (인)

약정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장 (인)

별첨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1부.

첨부 3.
(개 정)
별지 제5호서식

표준협력약정서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에 주소를 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약정자"라 한다)와
에 주소를 둔 (이하 "약정상대자"
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약정자와 약정상대자가 국내·외 사업에 공동참여하는데 있어 사업품질 향상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사간의 상호협력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협력분야 및 범위)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측량법에서 정의한 기술용역 등을 말한다.
2. "전문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상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말한다.
3. "기타지원"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 건설공사 부문의 지원 및 기자재 구매 또는 기타 일반 분야의 지원을 말한다.

② 양사는 사업을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1. 설계엔지니어링사업 (분야:)
2. 전 문 건 설 공 사 (분야:)
3. 기 타 지 원 (분야:)

③ 제2항의 협력분야에 대한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공동수행
2. 기술인력의 상호지원
3. 사업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④ 제3항에 규정된 양사간의 협력범위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조정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서를 갱신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 3 조 (협력방법)

①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본 약정의 목적 및 협력범위 내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참여 또는 상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양사는 국내·외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해 기술 또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 양사의 소속인력을 상대방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4 조 (비밀준수 및 지식재산권보호)

① 양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수행 또는 협력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기타 정보 및 자료는 본 약정의 기간 만료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영업 또는 비영업 목적으로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적법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약정 체결의 취지에 따라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상대방의 경영, 기

술, 인력현황, 사업수행경험은 공개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③ 약정대상자는 약정자가 필요에 의해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증 및 책임)

① 양사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본 약정에 따른 사업의 공동수행 중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계약 체결 시 상호협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 6 조 (상호협조 및 신의성실의무)

① 양사는 본 약정서 제1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와 범위에 정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② 양사는 상호 당초 협력약정을 체결한 시점에서 확인된 자격과 요건을 협약이 지속되는 전 기간동안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③ 어느 일방에서 제2항의 요건과 자격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협약은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제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이의 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기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분쟁해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공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정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8 조 (유효기간)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양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4년간(협력약정 정지 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중에는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협력 약정이 유지되며, 정기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협력약정이 해지된다. 이 경우 약정상대자가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부터 약정은 해지된다.

② 약정상대자는 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약정상대자의 약정갱신 신청에 대하여 약정자의 사정으로 약정 만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정갱신 심사 완료시까지 약정의 유효기간은 연장된다.

④ 약정자가 재평가 시행을 하는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또는 제9조에 의해 협력약정이 정지된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약정재개 통보를 받은 지정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재개된다.

제 9 조 (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제8조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코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본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은 정지 또는 해지한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이 일정기간 제한 된다. 다만, 제5호, 제11호, 제12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등록자격 및 면허, 신고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2. 부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제한 6개월

3. 대외기관 등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일방당사자에게 불명예를 끼친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4. 제26조의 3에 의한 재평가결과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자격요건 또는 신규등록기준 미달 업체 및 협력업체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업체 : 재등록제한 6개월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2년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
 6. 협력약정 및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 가. 협력약정 위배 : 재등록제한 2년
 - 나. 중대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1년
 - 다. 경미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6개월
 7. 협력약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가. 협력약정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2년
 - 나. 계약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1년
 8.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9.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품질, 보안준수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0. 공동수급협정을 위반하여 사업수주 또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1.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와 심각한 보안위규 사항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 2년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
 12.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2년이상의 재등록제한 또는 영구제한
 13.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부터 2년까지
 14. 협력상대자로부터 협력약정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15.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및 품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16. 해당 협력분야가 폐지되었을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 심의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제한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 일방약정자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협력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해지 사유가 특정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협력분야의 약정만 해지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경우는 모든 협력약정분야를 해지 할 수 있다.
- ⑤ 일방약정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 ⑥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이 해지된 당사자는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위반 사유별로 협력업체 재등록이 제한된다.

제 10 조 (용어의 해석 등)

본 약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양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경과조치)

본 협력약정에 의거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가 기존의 협력약정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사업은 본 협력약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년 월 일

약 정 자

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

상 호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대표자 : 사장 (인)

약정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장 (인)

별첨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1부.